

법 인 정 관

제 정 1964년 1월 1일
설 립 허 가 1964년 3월 11일 (보허 제656호)
개 정 1차 1972년 7월 6일 (보허 제1327호)
개 정 2차 1972년 9월 21일 (보허 제1490호)
개 정 3차 1976년 2월 14일 (보허 제46-7호)
개 정 4차 1976년 7월 6일 (보허 제46-11호)
개 정 5차 1981년 10월 7일 (보허 제46-23호)
개 정 6차 1987년 3월 6일 (보허 제46-1호)
개 정 7차 1987년 11월 19일 (보허 제46-2호)
개 정 8차 1988년 2월 26일 (사복 31330-1656호)
개 정 9차 1990년 3월 21일 (사복 31330-2390호)
개 정 10차 1992년 5월 26일 (보인 제46-12호)
개 정 11차 1994년 4월 8일 (보인 제46-18호)
개 정 12차 1997년 4월 18일 (보허 제46-27호)
개 정 13차 1998년 12월 5일 (사회 65100-232호)
개 정 14차 2002년 2월 8일 (사회 65140-303호)
개 정 15차 2004년 7월 5일 (사회 8400호)
개 정 16차 2006년 6월 7일 (사복 11384호)
개 정 17차 2006년 12월 21일 (주민 5789호)
개 정 18차 2008년 9월 8일 (사복 31127호)
개 정 19차 2008년 10월 29일 (사복 36988호)
개 정 20차 2009년 7월 7일 (사복 24560호)
개 정 21차 2010년 1월 18일 (주민 1465호)
개 정 22차 2010년 4월 7일 (주민 9806호)
개 정 23차 2010년 12월 3일 (복정 6403호)
개 정 24차 2011년 2월 14일 (복정 4670호)
개 정 25차 2011년 4월 21일 (복정 13241호)
개 정 26차 2012년 9월 3일 (복정 20869호)
개 정 27차 2012년 10월 30일 (복정 26405호)
개 정 28차 2014년 2월 12일 (복정 3507호)
개 정 29차 2014년 9월 1일 (복정 21572호)
개 정 30차 2014년 12월 5일 (복정 29373호)
개 정 31차 2015년 12월 9일 (복정 31385호)
개 정 32차 2016년 4월 20일 (복정 10890호)
개 정 33차 2017년 1월 6일 (복정 604호)
개 정 34차 2018년 1월 24일 (복정 2457호)
개 정 35차 2018년 4월 10일 (복정 10544호)
개 정 36차 2018년 7월 31일 (복정 21175호)

개정 37차 2018년 12월 14일 (복정 35751호)
개정 38차 2019년 4월 9일 (복정 10778호)
개정 39차 2020년 1월 13일 (복정 976호)
개정 40차 2020년 5월 1일 (복정 14166호)
개정 41차 2020년 8월 21일 (복정 26583호)
개정 42차 2021년 1월 11일 (복정 1048호)
개정 43차 2021년 4월 12일 (복정 13347호)
개정 44차 2021년 7월 27일 (복정 25913호)
개정 45차 2021년 12월 3일 (복정 40869호)
개정 46차 2022년 3월 31일 (복정 11392호)
개정 47차 2022년 8월 23일 (복정 29090호)
개정 48차 2022년 12월 20일 (복정 42284호)
개정 49차 2023년 4월 10일 (복정 9964호)
개정 50차 2023년 8월 8일 (복정 20619호)
개정 51차 2024년 1월 10일 (복정 703호)
개정 52차 2024년 5월 1일 (복정 11063호)
개정 53차 2024년 8월 14일 (복정 19954호)
개정 54차 2024년 12월 30일 (복정 31960호)
개정 55차 2025년 4월 11일 (복정 10033호)
개정 56차 2025년 8월 5일 (복정 19977호)
개정 57차 2025년 12월 23일 (복정 3222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국제월드비전에 의하여 설립되어 한국의 사회 복지사업법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봉사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하 ‘법인’)이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법인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 또는 설치 운영한다.

① 사회복지사업 및 지원사업

1. 아동복지사업

2. 청소년복지사업

3. 노인복지사업

4. 장애인복지사업

5. 가정복지사업

6. 지역사회복지

7. 기타 제사회복지사업 및 지원사업

② 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사업

③ 교육, 선교, 문화사업

④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홍보, 결연사업

⑤ 국외 원조사업

⑥ 전 각 항의 사업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⑦ 기타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되는 사업

제 2 장 자산 및 회계

제1 절 자산

제5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표 I 의 기본 재산목록에 등재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6조 【자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 담보, 양도, 교환, 기부 등 변동할 때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경비의 조달 및 유지방법】 이 법인에서 활용되는 모든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금과 기부금, 독지가의 기여금품, 정부보조금, 잉여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8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9조 【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전에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이 법인의 결산은 지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법인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규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회장 1명
3. 이사 14명(이사장, 회장 포함)
4. 감사 3명

② 임원중 회장은 상임으로 그 외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 ① 이 법인의 임원은 월드비전 핵심문서(소명헌장, 핵심가치, 비전헌장, 협약서)에 서명하고, 사업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정수 3분의 1은 주무관청내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감사 중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추천받은 임원의 경우 이 법인의 정체성과 임원수행능력에 부적합할 경우에 추천기관에 재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회장은 이사회 인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이 법인 이사회는 월드비전 국제협력체의 일원으로 국제월드비전의 총재 혹은 총재가 임명한 국제월드비전의 임직원을 이사로 포함하되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 법인의 임원은 월드비전 국제협력체의 일원으로 정해진 약정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1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가 아니어야 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 18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가 아니어야 한다.
- ③ 이 법인의 임원은 퇴임한 지 2년 내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제17조 【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주재,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단, 이사장이 유고시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사전에 지명한 이사가 없을 때에는 최연장 이사가 승계한다.

- ② 회장은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국제월드비전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를 선임, 파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

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8조 【상임임원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의 연임은 매회 상임임원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비상임 임원이 상임임원으로 선임될 시 그 임기는 전임 상임임원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3년 2회 연임으로 한다.

제19조 【비상임임원의 임기와 임원보선】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 연임 할 수 있다. 단, 국제월드비전 이사로 활동하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국제월드비전이사직 임기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새 임기로 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전 제 1항의 이사로서의 잔여임기 및 제 3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임이사장의 임기만료 익일부터 3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보수】 ① 법인의 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수와 기타 직무상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② 법인의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상임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의 겸직금지】 임원은 이 법인이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 법인은 이사장, 회장,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3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시기에 이사장의 재량으로 개최하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 신속히 사전 통보하여 조기 개최할 수 있다.

④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1이나 감사의 서면요청으로 소집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5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 ③ 사업의 계획과 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④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직제개편과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⑥ 회장과 부회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법인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 ③ 본인 또는 친인척 및 그 유관기관과의 이해득실에 관련된 사항

제27조 【회의록】 회장은 이사회의 모든 회의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참석인원 전원(의장 포함)과 감사의 날인을 받아 비치한다.

제 5 장 회 원

제28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외국인으로서 이 법인의 이념 및 목적을 지지 및 동의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제29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이 법인이 수행 또는 지원하는 행사 중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이 법인이 출간하는 간행물 및 기타 정보자료를 회원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제3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을 지지 및 동의하고 이 법인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하며, 이 법인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31조 【회원에 관한 규정】 회원의 구성 및 회원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이 법인의 회원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수 익 사 업

제32조 【수익사업】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 기타 부대사업

② 제 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3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4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의 4분의 3이상의 찬성과 국제월드비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잔여재산의 처리】 이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와 국제월드비전 결의 및 법인 청산절차를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8 장 공 고 방 법

제37조 【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회의록 등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기 간행물 또는 홍보지에 실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제 법령에 따라서 7일 이상 90일이내로 한다.

제 9 장 보 칙

제38조 【위원회】 이 법인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 【준용법규】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0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I(목적사업용)

기본재산목록

(단위 : 원)

구분	소재지	규모(㎡)	종별	장부가액	비고
현금		-		934,246	우리은행, 정기예금,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계좌번호 1020-853-167758
토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11-11	1,179.70	대지	135,261,616	1982.02.18.취득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141	35,925.50	임야	189,142,214	1965.06.02.취득
	서울 송파구 거여동 5-8	1,847.40	대지	310,680,830	1987.12.24.취득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957	1,041.00	“	110,346,000	1973.10.27.취득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14-7	230.80	“	320,000,000	2006.05.22.취득
	강원 춘천시 효자동 373-90	2,135.49	“	146,647,260	1986.10.31.취득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55-9	1,671.00	“	329,812,698	1987.06.12.취득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632-1 번지	288	“	248,141,100	2006.12.27.취득 2009.12.29. 취득 (2018.7.31 합지처리)
	경남 고성군 거류면 가려리 산69	5,752.00	임야	3,403,736	2008.07.24.취득
	서울 은평구 역촌동 31-14	217.9	대지	477,201,000	2009.06.19.취득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150-4	931	대지	300,000,000	2015.06.30.취득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706-1	347.6	대지	300,000,000	2017.12.29.취득	
소 계				2,870,636,454	
건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11-11	1,487.42	지상4층	549,861,200	2011.1.18.증축
	서울 송파구 거여동 5-8 가동	1,624.13	“	548,560,830	1988.11.10.취득
	서울 송파구 거여동 5-8 나동	467.55	지상2층	260,000,000	1988.11.10.취득
	송파복지관 희망의 집 증축	106.19	지상1층	39,390,000	1999.01.23.취득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957	2,726.10	지상3층	2,805,422,560	2003.12.29.취득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14-7	453.65	“	235,000,000	2006.05.22.취득
	강원 춘천시 효자동 373-90	1,256.25	지상2층	234,839,000	1987.12.30.취득
	춘천복지관 증축	878.98	지상3층	591,608,594	1995.11.10.취득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55-9	1,645.97	“	566,591,400	1991.02.27.취득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1동 632-1 번지	431.95	지상3층	479,987,500	2012.10.19.평가
서울 은평구 역촌동 31-14	609.23	지상5층	701,990,000	2011.1.18.신축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150-4	338.65	지상1층	627,000,000	2016.12.10.신축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706-1	554.94	지상3층	580,000,000	2017.12.29.취득	
소 계				8,220,251,084	
합 계				11,091,821,784	

별표II(수익사업용)

(단위:원)

구분	소재지	규모(㎡)	종별	장부가액	비고
토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본회빌딩)	1,547.00	대지	6,760,390,000	1981.06.18.취득 재평가실시 (2000.10.01)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1외 2필지	14.5193	대지	0	2011.2.24.취득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449-16 유로 캐슬아파트 304호	29.31	대지	-	2012.9.25.취득
건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본회빌딩)	11,560.95	지하4층 /지상11 층	5,696,262,000	1983.05.18.취득 재평가실시 (2000.10.01)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1외 2필지 제5층 41호	66.83	건물	240,000,000	2011.4.6.취득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449-16 유로 캐슬아파트 304호	163.14	공동주택	200,000,000	2012.9.25.취득
합 계				12,896,652,000	

별표III

임원명단

직 위	임 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사장	2026.1.1~2028.12.31 (3년간)	박 노 훈	-	-
대표이사 (회장)	2024.1.1~2026.12.31 (3년간)	조 명 환	-	-
이 사	2023.8.1~2026.7.31 (3년간)	양 숙 미	-	-
이 사	2023.8.1~2026.7.31 (3년간)	김 수 정	-	-
이 사	2023.8.1~2026.7.31 (3년간)	박 경 현	-	-
이 사	2025.1.1~2027.12.31 (3년간)	주 승 중	-	-
이 사	2026.1.1~2028.12.31 (3년간)	김 진 백	-	-
이 사	2024.1.1~2026.12.31 (3년간)	Charles Kenneth Badenoch	-	-
이 사	2025.8.1.~2028.7.31. (3년간)	한 회 숙	-	-
이 사	2023.8.1~2026.7.31 (3년간)	박 동 찬	-	-
이 사	2023.8.1~2026.7.31 (3년간)	윤 세 리	-	-
이 사	2025.4.1~2028.3.31 (3년간)	김 승 욱	-	-
이 사	2025.4.1~2028.3.31 (3년간)	김 희 진	-	-
이 사	2026.1.1~2028.12.31 (3년간)	김 순 미	-	-
감 사	2024.4.1~2026.3.31 (2년간)	홍 창 식	-	-
감 사	2024.8.1~2026.7.31 (2년간)	백 현 석	-	-
감 사	2024.8.1~2026.7.31 (2년간)	노 원	-	-

별표 IV

법인이 사용할 인장

1) 직 인



2) 법인 인감

